

2026 박문각 김희상 필수서 정오표(초판기준) 1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25.12.2.개정)
주택법(2026.2.3.개정) 포함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32p (1) 도시·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	② 예외: 다음의 도시·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(☎)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)	② 예외: 다음의 도시·군관리계획은 국 토교통부장관(☎)의 경우에는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<u>시·도지사</u>)
51p 4 수산자원보 호구역	(1)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~	(1)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(<u>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·도지사</u>)은 직접 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~
249p 1 분양가상한 제 적용주택	(2) 적용 제외 ⑦ 추가	(2) 적용 제외 ⑦ <u>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쪽방 밀 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 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</u>
부록 5p 핵심논점7	4. 수산자원보호구역: 해장 + 공유수 면	4. 수산자원보호구역: 해장 <u>또는 시·도지 사</u> + 공유수면
부록 28p 핵심논점37	3.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 는 주택: 도시형 생활주택, ~ 도심 공 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·공급하 는 주택	3.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: 도시형 생활주택, ~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, <u>쪽 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 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</u>